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,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변경하고, 본 규정의 목적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규정함을 명시 (제명 및 제1조)

나. 관공서의 공휴일을 일요일 및 법률에 따른 공휴일로 정하고, 재외공관의 공휴일을 별도로 정함 (제2조)

다. 대체공휴일은 설·추석 연휴, 어린이날 외 국경일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, 대체공휴일의 운영방식을 정함 (제3조)

라. 임시공휴일의 지정 주체 및 절차를 명확히 함(제4조 신설)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##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관공서”를 “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고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공서”로 한다.

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관공서의 공휴일) ①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요일
2. 법 제2조에 따른 공휴일
3.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법 제2조 제1호와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.

제3조(대체공휴일)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,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(토요일, 일요일을 제외한다)을 대체공휴일로 한다. 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.

1. 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

겹치는 경우

2. 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
3. 법 제2조 제1호, 제3호,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법 제2조 각 호의 다른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이 아닌 날에 겹치는 경우
4. 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, 동 조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휴일이 그 전날인 토요일이나 그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임시공휴일) ① 정부는 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 부칙 제2조의 적용) 이 영 시행일 전이라도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(일요일을 제외한다)을 대체공휴일로 한다. 이 경우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6항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6제1항제2호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5호나목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4항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4호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⑦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3조제5항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⑧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0조제2항 중 “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각 호(제1호는 제외한다)”를 “「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 제1항 제2호”로 한다.

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1조제5항 본문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6조제4항제2호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2조의2제4항제1호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⑫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의7제17항제1호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⑮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영은 <u>관공서</u>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공휴일) <u>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일요일</u></li> <li>2. <u>국경일 중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</u></li> <li>3. <u>1월 1일</u></li> <li>4. <u>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</u> 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</li> <li>5. <u>삭 제</u></li> <li>6. <u>부처님오신날 (음력 4월 8일)</u></li> <li>7. <u>5월 5일 (어린이날)</u></li> <li>8. <u>6월 6일 (현충일)</u></li> <li>9. <u>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</u></li> </o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공휴일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‘<u>법</u>’이라고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<u>관공서</u>-----.</p> <p>제2조(관공서의 공휴일) ① <u>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일요일</u></li> <li>2. <u>법 제2조에 따른 공휴일</u></li> <li>3. <u>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</u></li> </ol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법 제2조 제1호와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.</u></p>

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

10. 12월 25일 (기독탄신일)

10의2. 「공직선거법」 제34조

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

11.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

제3조(대체공휴일) ① 제2조제4호

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.

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.

제3조(대체공휴일) 법 제3조에 따

라 다음 각 호의 경우,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(토요일, 일요일을 제외한다)을 대체공휴일로 한다. 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.

1. 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

2. 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

3. 법 제2조 제1호, 제3호,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법 제2조 각 호의 다른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이 아닌 날에 겹치는 경우

<신 설>

4. 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, 동조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휴일이 그 전날인 토요일이나 그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

제4조(임시공휴일) ① 정부는 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복무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36